

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에 관한 공시

□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

▪ 개정사유

- 제5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개정(안)을 승인함에 따라, 이사회회의 구성 변경내용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반영

▪ 주요 개정내용(신·구조문 비교표)

기 존	개 정 후	개 정 사 유
제4조 (이사회회의 구성) ① 회사는 <u>3인 이상 10인 이하</u> 의 이사를 두며,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되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한다.	제4조 (이사회회의 구성) ① 회사는 <u>3인 이상 9인 이하</u> 의 이사를 두며,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 ② (좌동)	이사회회의 의사결정을 명확 (可否同數 방지)하게 하기 위해, 실질적인 이사회 구성 최대 인원수로 이사선임 제한사항을 변경
(신 설)	부 칙 <u>이 정관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</u>	(신 설)